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6. 9. 10.
행정재무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8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6년 8월 1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윤정중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'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('94. 8. 3.) '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주민 편의사업·복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여도 자체심의기구, 절차 등의 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
- 장래의 민자유치사업추진에 대비하고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을 객관적이고, 공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(안 제2조)
-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3조)
-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 구성·운영(안 제6조)
- 업무수행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관련부서·단체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(안 제7조)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: 허 영훈)

동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민편의사업, 복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투자재원 확충방안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우리구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을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의 "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에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는 조항과 "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"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앞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복지분야에서는 민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생각 되며, 또한 동조례의 제정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의 내용도 관계법령의 범주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 査 結 果 : 원 안 의 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(안)

의안
번호

71

제출년월일 : 1996. 8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(’94. 8. 3)”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주민 편익사업·복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확충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여도 자체심의기구, 절차등의 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
- 장래의 민자유치사업추진에 대비하고 민자유치사업추진과정을 객관적이고, 공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(안 제2조)
-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3조)
-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 구성·운영(안 제6조)
- 업무수행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관련부서·단체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

나. 예산조치 : 년 2회 개최시 50만원 소요

다. 조 례 안 : 별첨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구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
3.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4. 사업시행자 선정 및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
5.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재무국장, 시민생활국장, 도시정비국장, 건설국장, 사업주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.

제6조 (실무작업반)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·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 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 (수당지급)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